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 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 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1. 12. 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 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 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 8. 어업권·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양식업의 종류, 어장·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 ③ 삭제 < 2021. 12. 31.>
- ④ 삭제 < 2021. 12. 31.>
- ⑤ 삭제 < 2021. 12. 31.>
- ⑥ 삭제 < 2021. 12. 31.>
- ⑦ 삭제 < 2021. 12. 31.>
- ⑧ 삭제<2021. 12. 31.>
- ⑨ 삭제 < 2021. 12. 31.>
- ⑩ 삭제 < 2020.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시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고시해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1. 12. 31.]
-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 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회계・조세・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했던 사람
-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1. 1. 5., 2021. 12. 31.>

-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 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개정 2014. 1. 1., 2014. 8. 12.>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4. 8. 12.>

-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3.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5. 부착된 금고
- 6. 교환시설
-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8.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9. 12. 31.>
 -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 삭제 <2010. 12. 30.>

-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구 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지방세기본법」제46조제 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 나. 유한책임사원
 -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법인 중 해당 개인·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법인
 -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 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 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3. 27., 2023. 3. 14.>
 -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17. 12. 29.>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사업 추진 중에 조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의 면적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 12. 31.>]

-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 삭제 < 2021. 12. 31.>

[본조신설 2015. 12. 31.]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1. 12. 31.>]

-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0. 12. 30.]
-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 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 개시일 현재「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1. 12. 31.>
 -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6. 12. 3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 (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 2023. 12. 29.>
 -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 액
 -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신설 2023. 3. 14., 2023. 12. 29., 2024. 12. 31.>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 ®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3, 14,, 2024, 12, 31,>
-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 "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법적 근거
 -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 3. 의견제출기한
 -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본조신설 2021. 12. 31.]

제15조 삭제 <2021. 12. 31.>

제16조 삭제 <2021. 12. 31.>

제17조 삭제 <2021. 12. 31.>

-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 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6.
 - 4. 26., 2017. 7. 26.,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31., 2024. 3. 26.>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 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4. 부가가치세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4. 3. 26.>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 ④ 삭제<2021. 12. 31.>
- ⑤ 삭제<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30.>
 -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경우
 -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9.>
 -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 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 A × [B - (C × B / D)]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 A × [B - (C × B / D)] - E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한 토지면적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가액 = (A × B) - C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 면적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신설 2023. 3. 14.>
-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본조신설 2021. 12. 31.]

제18조의5(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 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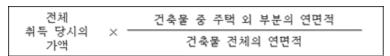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본조신설 2021. 12. 31.]
-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신설 2015. 12. 31., 2016. 12. 30., 2021. 12. 31.>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신설 2016. 12. 30., 2021. 12. 31.>
-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2021.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2023. 12. 29.>
 - 1. 화해조서 · 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 12. 29.>
 -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개정 2021. 12. 31.>
 -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 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2.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2021, 12, 31,>
 -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2019. 5. 31.>
 - ⑦「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 으로 본다.<개정 2015. 7. 24., 2016. 8. 11., 2018. 2. 9.>

-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2014. 8. 12.>
- ⑨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 일로 본다.
-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① 삭제<2017. 12. 29.>
- ⑫ 「민법」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신설 2021. 12. 31.>
- ⑬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신설 2015. 7. 24., 2021. 12. 31.>
- ④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8. 12., 2015. 7. 24., 2021. 12. 31.>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 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22조의2 삭제 <2020. 8. 12.>

-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란 개인 또는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용도에 제공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31.>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신설 2020. 12. 31.>
-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자동차관리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신설 2014. 8. 12., 2019. 12. 31., 2020. 12. 31.>

제24조 삭제 <2010. 12. 30.>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2. 7. 10., 2013. 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2015. 6.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7. 26., 2017. 12. 29., 2018. 2. 9., 2019. 12. 31., 2020. 5. 12., 2020. 8. 11., 2020. 12. 8., 2020. 12. 31., 2021. 4. 27., 2021. 8. 31., 2021. 12. 31., 2022. 2. 28., 2023. 12. 19.>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2.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 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 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9.「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업
-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 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14.「방송법」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 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1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19.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0.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3.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 24.「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 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 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 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 37.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
- ② 삭제<2020. 8. 12.>
- 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신설 2010. 12. 30.>
-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9, 2023, 3, 14.>
-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9. 12. 31.>
-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1.>
-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2019. 12. 31.>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골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3, 12, 29.>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삭제 < 2023. 12. 29.>
- ③ 삭제 < 2023. 12. 29.>
-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20. 8. 12., 2020. 12. 31.>
-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 도록 시설된 미용실
-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 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0. 12. 30., 2016.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2022. 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5. 7., 2024. 5. 28., 2024. 9. 10., 2024. 12. 3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 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2의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 2의3.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 3.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제 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7.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주택
 -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 4)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 · 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건축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3)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 13. 물적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13의2.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15. 「주택법」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 다. 「주택법」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라. 「주택법」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마. 「주택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 16.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 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 나.「주택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본조신설 2020. 8. 12.]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 2021. 12. 31., 2023. 3. 14.>
-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1.>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신설 2024. 3. 26., 2024. 5. 28., 2024. 12. 31.>
 -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립주택"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 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 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3. 「주택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26.>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26.>
-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 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26.>
-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3. 14., 2024. 3. 26., 2024. 12. 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2.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 7.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 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본조신설 2020. 8. 12.]

[대통령령 제34353호(2024. 3. 26.)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통령령 제34353호(2024. 3. 26.) 제28조의4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2, 28,>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31.>

[본조신설 2020. 8. 12.]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4. 12. 31.>
-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3. 삭제 < 2024. 12. 31.>

[본조신설 2020. 8. 12.]

-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5. 7. 24.>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개정 2015. 7. 24.>
 -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5. 12. 31., 2019. 12. 31.>
 -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절 부과 ㆍ 징수

-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3. 3. 1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6. 28, 2016. 12. 30.>
-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② 삭제<2011. 12. 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군・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1. 29., 2016. 12. 30.>
-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23. 12. 29.>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 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시작한 날로 한다.
-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제35조 삭제 <2019. 2. 8.>

제35조의2 삭제 <2015. 7. 24.>

-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1., 2016. 12. 30.>
 -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④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1. 1. 5., 2021. 12. 31.>
 - ⑤ 등기・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12. 30.]

-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 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 2016. 12. 30.>

[본조신설 2010. 12. 30.]

-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2. 28.>
 -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4.>
 - 1. 삭제 < 2013. 1. 1.>
 -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 3.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 ·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목적·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3.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정보 및「주택법」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0. 8. 12.]

[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24. 3. 26.>]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8조의3에서 이동 <2024. 3. 26.>]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6. 1. 6., 2024. 12. 31.>
 -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2. 「의료법」및「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매년 1월 1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 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자동차등록령」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1. 5. 30.]
-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 7. 24., 2019. 2. 8.>
 -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사원・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4. 12. 31.>
 -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2. 31.>
 - ④ 삭제 < 2024. 12. 31.>
 - ⑤ 「상법」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 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1. 4. 27.>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 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2.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④ 삭제 < 2016. 12. 30.>
-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2010. 12. 30.>
-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 (퍼센트)

-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 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제2호다목 · 제3호라목 · 제5호나목 · 제8호라목 · 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7. 24.>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 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④ 삭제 < 2011. 12. 31.>
 -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군・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4. 8. 12., 2016. 12. 30.>
-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 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 2016. 12. 30.>
 -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 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④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 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30., 2021. 1. 5., 2021. 12. 31.>
 - ⑤ 등기・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12. 30.]

-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등기 또는 등록・가등록을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 2016. 12. 30.>

[본조신설 2010. 12. 30.]

-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 ·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6. 28., 2016. 12. 30.>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4. 10., 2014. 1. 1., 2014. 12. 30., 2015. 12. 31., 2016. 1. 19., 2017. 3. 29., 2017. 10. 17., 2018. 12. 31., 2022. 11. 29., 2024. 5. 7.>
 - 1. 매장유산 발굴
 -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또는 신고
 -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 5. 토지의 형질 변경
 -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사설도로 개설
 -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 10. 「먹는물관리법」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13. 공유수면의 매립
- 14. 초지 조성 및 전용
-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16.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17. 화약류 사용
-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19. 특정공사(「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21.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25.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28. 지하수의 개발 이용
- 29. 골재 채취
-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31. 건축 및 대수선
-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 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 36.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 37.「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 38.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39.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 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 41. 「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 42. 「항공안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 44.「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 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4. 12. 31.>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 12. 30.>

- ② 삭제<2010. 12. 30.>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54조 삭제 <2010.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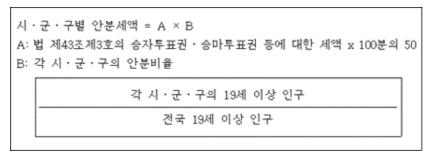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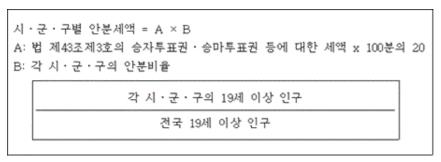
-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 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신설 2021. 12. 31.>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31.>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 2014. 7. 18., 2016. 12. 30., 2018. 3. 27., 2020. 12. 31.>

-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 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 2014.

- 1. 1., 2014. 7. 18., 2014. 12. 30., 2016. 12. 30., 2018. 3. 27.>
-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마. 제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4. 삭제 < 2014. 12. 30.>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3. 14.>

-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5. 7. 24.]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27.>

담배종류	수 량		
결 련	200개비		
엽귈련	5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전자담배	결련형 2DD개비		
	기타유형 11D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목개정 2015. 7. 24.]

-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 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2019. 12. 31.>
-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 라. 연간 생산규모
 - 마. 영업개시일
 -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아. 그 밖의 참고사항
 -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가. 양도인・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양도인·양수인,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양도 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 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허가취소일
 - 라. 허가취소 사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 라. 제조(공급)업체명
-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등록취소일
 - 라. 등록취소 사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6. 12. 30.]

제67조 삭제 <2016. 12. 30.>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31., 2020. 12. 31.>

-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 · 군별, 품종별 수량
-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 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 · 군별, 품종별 수량
-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 1. 지난해 해당 시・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 3. 지난해 전 시·군지역(시·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군별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2023. 3. 14.>
- 1. 지난해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 3. 지난해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 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15. 12. 31.>
-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 4. 체납 여부
-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신설 2013. 1. 1.>
- 1.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군(폐지되는 시・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군 또는 다른 시・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13. 1. 1.>

변경 구역의 발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전체 인구

-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 제70조(세액의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70조의2(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31.>

-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3. 26., 2024. 12. 31.>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본조신설 2015. 12. 31.]

-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8. 12.>
-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 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 3. 26.>

제6장 지방소비세

-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4.>
 - 1. "소비지수"란「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 3.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산 규모
-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2019. 12. 31., 2021. 12. 31.>
-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A + B) × C

A: 나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다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

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1

인분액

(제3호의 금액 + 제4호 × 각 목의 금액의 합)]

작 목의 금액의 합)]

하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7%) - (제6 당 시·도의 가중치 해당 시·도의 =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안분액 × 60%

각 시 ·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3%) - (제6 당 시·도의 가중치 해당 시·도의 =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안분액 × 60% 각 시 ·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나. 시・군・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 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가중치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 인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 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 × -한 시·도 내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2023년 1월 1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5

해당 시·군·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할당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B: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

[(해당 시·군·구의 연구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 내 시·군·구인구의 합) + (해당 시·군·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군·구가 속 × 1 2 한 시·도 내 시·군·구가 속 × 1 2

- ③ 삭제<2021. 12. 31.>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개정 2022. 2. 28.>
-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 나. 「지방교부세법」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 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 계 전출금액
 - 마.「지방재정법」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 ⑤ 삭제 < 2021. 12. 31.>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 3. 14, 2016. 12. 30, 2021. 12. 31.>
-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군・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 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 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 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도별로 나누어 각 시·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7장 주민세

-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9. 12. 31., 2024. 12. 31.>
 -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 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 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 1.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1의2.「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 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본조신설 2014. 3. 14.]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1.>
 -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3. 3. 14., 2024. 12. 31.>
 - 1. 담배소매인
 - 2. 삭제 < 2015. 12. 31.>
 - 3. 삭제 < 2015. 12. 31.>
 - 4. 연탄 양곡소매인
 - 5. 노점상인
 - 6.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9. 2. 8., 2021. 12. 31., 2023. 3. 14.>
-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3. 27., 2020. 12. 31.>
-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4., 2016. 12. 30., 2020. 12. 31.>
 -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4., 2020. 12. 31.>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9. 12. 31.]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31., 2021. 12. 31., 2023. 6. 30.>
 - 1.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2.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3.「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12. 31.>
 -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9. 2. 8.]
-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15. 12. 31.]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1.]

[종전 제85조의3은 제85조의4로 이동 <2015. 12. 31.>]

-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제8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의4는 제85조의5로 이동 <2015. 12. 31.>]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2. 8.]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전문개정 2014. 3. 14.]

-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12. 30., 2019. 12. 31.>
 -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 ③「소득세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신설 2019. 12. 31.>
 - ④ 삭제<2024. 12. 31.>

[전문개정 2014. 3. 14.]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중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2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30., 2017. 7. 26.>

-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 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 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지망자지단제의 법 제103조의19에따른 과세표준 × 법 제103조20제1항의 세율 × 안분율 × (법인지방소득세세율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④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 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2. 31.]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 •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4. 8. 12.]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 령」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4.]

-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
 -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3. 3. 14.>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전문개정 2014. 3. 14.]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8조 및 제 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14.>

[전문개정 2014. 3. 14.]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2020. 12. 31.>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 12. 31.>
- ③ 법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4. 27.>
-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1. 4. 27.>
- ⑤ 법 제93조제1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21, 4, 27.>
- ⑥ 법 제93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4. 27.>
- ①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1. 4. 27.>
-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⑧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 12. 31., 2021. 4. 27.>
-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D,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D,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 · 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3. 3. 14.>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3. 3. 14.>

[전문개정 2014. 3. 14.]

-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3. 14.]

-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 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4.]

-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4.]

-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3. 14.]

제97조 삭제 <2015. 7. 24.>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2. 28.>

-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소득세법」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과세기간과 직전전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이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신설 2022. 2. 28.>
- ③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2. 28.>
- ④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신설 2021. 12. 31., 2022. 2. 28.>
-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2. 31,, 2022. 2. 28.>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 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 이라 ×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 ⑥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21. 12. 31., 2022. 2. 28., 2023. 12. 29.>
-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신설 2021. 12.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31., 2022. 2. 28.>

⑧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31., 2022. 2. 28.>

[전문개정 2014. 3. 14.] [제목개정 2022. 2. 28.]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전문개정 2014. 3. 14.]

제2절의2 삭제 <2024. 12. 31.>

제99조의2 삭제 <2024. 12. 31.>

제99조의3 삭제 <2024. 12. 31.>

제99조의4 삭제 <2024. 12. 31.>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 12. 30.>

-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4. 8. 12., 2015. 12. 31.>
- ③ 삭제<2014. 8. 12.>
- ④ 삭제 < 2014. 8. 12.>
- ⑤ 삭제<2014. 8. 12.>
- ⑥ 삭제<2020. 12. 31.>
-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8. 3. 27.>
- ⑨ 삭제<2018. 3. 27.>
- ⑩ 삭제 < 2018. 3. 27.>
- ① 삭제<2018. 3. 27.>
- ②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24. 12. 31.>
-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 3. 27.>
- ④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 3. 27.>
- ⑤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 3. 27.>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4. 3. 14.]

-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 · 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4. 28., 2023. 3. 14.>
 -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3.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4.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 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7. 12. 29.>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이자율

[본조신설 2014. 3. 14.]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2. 2. 28.>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2. 2. 28.>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22. 2. 28.]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2024. 12. 31.>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7. 7. 26.>
 -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신설 2020. 12. 31.>
 - ④ 삭제 < 2024. 12. 31.>

[전문개정 2015. 7. 24.]

[제목개정 2020. 12. 31.]

-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8. 3. 27., 2018.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신설 2018. 3. 27.>

[본조신설 2014. 3. 14.]

[제10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의8은 삭제 <2020. 12. 31.>]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 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4. 3. 14.]

[제10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의9는 제100조의8로 이동 <2020. 12. 31.>]

-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 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 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종전 제100조의10은 제100조의9로 이동 <2020. 12. 31.>]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2017. 7. 26.>
-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신설 2015. 12. 31., 2017. 7. 26.>
- ⑥ 법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2021. 1. 5.>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 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30., 2017. 3. 27., 2024. 3. 26.>
 -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3. 12. 29.>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 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2., 2014. 11. 19., 2017. 7. 26.>
 -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19. 12. 31.]

-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제<2018. 3. 27.>
 -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 104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59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4. 3. 14.]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 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법인세법 시행령」제 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2. 28.>
 -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2. 2. 28.>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신설 2022, 2, 28.>
 -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2. 28.>
 -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신설 2021. 12. 31., 2022. 2. 28.>
 - ⑥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법제처 6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 3. 27., 2019. 5. 31., 2021. 12. 31., 2022. 2. 28., 2023. 12. 29.>
-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22. 2. 28.]

-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7. 7, 26.>
 -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 2017. 7. 26, 2018. 12. 31.>
 -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 2024. 3. 26.>
 -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
 -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9. 2. 12.>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 2019. 2. 12.>
 -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신설 2019. 2. 8.> [본조신설 2014. 3. 14.]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20 삭제 <2015. 7. 24.>

-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신설 2020. 12. 31.>
 -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 6항을 따른다.<개정 2020, 12, 31.>
 -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7. 26.>
 -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4. 3. 14.]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 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신설 2021, 12, 31.>
 -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2.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 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21, 12, 31,>
 -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31.>
 -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제처 62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21. 12. 31.]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3. 12. 29.>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본조신설 2014. 3. 14.]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법인세법」제 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15. 7. 24.]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 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19. 5. 31., 2020. 4. 28., 2021. 12. 31.>

법제처 6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 1.「법인세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2.「법인세법」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 3. 「법인세법」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본조신설 2014. 3. 14.]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 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 3. 14.>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전문개정 2023. 12. 29.]

-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 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삭제<2016. 12. 30.>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4. 3. 14.]

제11절 보칙 <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전문개정 2019. 12. 31.]

-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15. 12. 31.]

-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 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환급・충당 내역

[본조신설 2015. 12. 31.]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 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9. 2. 12,, 2019. 5. 31.>
 - 1. 「법인세법」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 2.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

법제처 65 국가법령정보센터

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 5. 31.>
-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신설 2019. 5. 31.>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납부한 세액 × _____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전문개정 2018. 3. 27.]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 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2. 30.>
 -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 भी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 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 배
	7 배	

-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1. 5. 30., 2012. 7. 20., 2013. 3. 23., 2013. 5. 31., 2013. 6. 28., 2014. 8. 12., 2014. 11. 19., 2016. 1. 22., 2016. 6. 21.,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3. 5. 30., 2024. 5. 28.>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법제처 67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 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 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 14.「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 17.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법제처 6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2. 전 · 답 · 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법제처 6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밭		
구분	사업	마릿수 (연중 최고 마릿수를 말 한다)	축사 (제곱 미터)	부대 시설 (제곱 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밭 (헥타르)	비고
1. 한우 (육우)	사육 사업	1마리당	7,5	5	0,5	D, 25	말·노새·당나귀 사육 을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 사업	1마리당	7,5	5	0,2	D,1	
3. 젖소	목장 사업	1마리당	11	7	D,5	D, 25	
4. 양	목장 사업	10마리당	В	3	0,5	D, 25	
5. 사슴	목장 사업	10마리당	66	16	0,5	D, 25	
6. 토끼	사육 사업	100마리당	33	7	2,0	D,1	친칠라 사육을 포함한 다
7. 돼지	양돈 사업	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B. 가금	양계 사업	100마리당	33	16	-	-	
9. 밍크	사육 사업	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함한다

-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4. 1. 1., 2020. 5. 26., 2024. 5. 7.>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0. 12. 30.>
-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 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18. 2. 27., 2021. 12. 28., 2022. 6. 14.>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 3.「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법」및「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 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신설 2017. 12. 29., 2020. 6. 2., 2021. 12. 31.>
-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 3.「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 계시설의 부속토지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 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 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신설 2017. 12. 29., 2018. 2. 9., 2018. 2. 27., 2019. 4. 2., 2020. 12. 31., 2021. 6. 8., 2022. 2. 17., 2023. 7. 7.>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투지
-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 (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법제처 72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 1) 준공인가일
 -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 2) 토지 공급 완료일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 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9.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법제처 73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 용 토지
-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 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2017. 12. 29., 2019. 5. 31., 2020. 6. 2., 2021. 4. 27., 2021. 10. 21., 2021. 12. 31.>
-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3.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 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법제처 7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공항시설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 나.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⑨ 제1항제2호라목・바목 및 제2항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 12. 29, 2023. 3. 14, 2024. 5. 28.>
-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 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19. 12. 31.>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법제처 75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 ②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31.>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

- 1. 1.,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2018. 12. 31., 2019. 12. 31.>
- 1. 삭제 < 2015. 12. 31.>
-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 5. 28.]

-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7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05조의2는 제105조의3으로 이동 <2021. 12. 31.>]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8.>

-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05조의2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삭제 <2021. 4. 27.>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개정 2014. 1. 1.>
-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9. 12. 31.>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법제처 77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 12, 3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3. 14., 2023. 6. 30., 2024. 5. 28.>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 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 3. 14.>
-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 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2021, 12, 31,

법제처 7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3. 14., 2024. 5. 7., 2024. 5. 28., 2024. 9. 10.>

-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 면적이「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4.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소득세법」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제 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건축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7.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 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4. 5. 28.>

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 나. 해당 주택을 2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 2023. 3. 14.>
-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21. 2. 17.]

-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2. 31., 2023. 12. 29.>
 -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3절 부과・징수

-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8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14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법제처 81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116조의2는 제116조의3으로 이동 <2023. 6. 30.>]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의3은 제116조의4로 이동 <2023. 6. 30.>]

-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민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16조의3에서 이동 <2023. 6. 30.>]

-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1. 12. 31., 2016. 8. 31., 2021. 2. 17., 2022. 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5. 28.>
 -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법제처 82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ⁿ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 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05/100)ⁿ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 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

법제처 8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이 해당 연도에 그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제119조 삭제 <2021. 12. 31.>

-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제3항제30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명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8., 2021. 2. 17.>
 -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개정 2021. 2. 17.>
 -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 2.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 3.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 4.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 료
 -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본조신설 2014. 4. 22.] [제목개정 2021. 2. 17.]

-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2. 1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4. 22.] [제목개정 2021. 2. 17.]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 가.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 다.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 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4.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5.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 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22. 2. 28.>
-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7. 삭제 < 2019. 2. 8.>
- 8.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법제처 8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3. 승합자동차
 -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 5. 특수자동차
 -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 2)「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 를 초과하는 자동차
 -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 1)「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 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 거나 신고된 자동차
-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3. 12. 29.>
-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개정 2013. 1. 1.>
-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한다.<개정 2016. 12. 30.>
-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개정 2024. 12. 31.>
-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 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 (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 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2. 8.>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9. 2. 8.>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8.>
 -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9. 2.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2. 8.> [제목개정 2019. 2. 8.]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

법제처 87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 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31.]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 2. 사용본거지의 변경
- 3. 자동차의 용도변경
-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8. 12.,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1.「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2.「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관세법」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법제처 8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군"이라 한다) 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9,830억원 ** 해당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 보조금
-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하고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3. 26.>
-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 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법제처 8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135조(세액통보)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8. 12.,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9. 2. 8., 2020. 12. 31.>

-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 2. 지하수
 -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지하수
 - 2) 「지하수법」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광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 4. 삭제 < 2020. 12. 31.>
- 5. 삭제 < 2020. 12. 31.>
- 6. 삭제 < 2020. 12. 31.>
-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2. 31.>
-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법제처 90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 은 전력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2)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3)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20. 12. 31.>
 -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0. 12. 30., 2020. 12. 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6., 2014. 1. 1., 2015. 12. 31.,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31., 2022. 11. 29.>
 -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카. 의료시설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 1. 1., 2014. 8. 12., 2015. 12. 31., 2016. 1. 19., 2017. 12. 29., 2018. 12. 31., 2020. 12. 31., 2021. 8.

법제처 91 국가법령정보센터

10., 2022. 11. 29.>

-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 1) 도매시장
 - 2) 소매시장
 - 3) 상점
 -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 1.]

제3절 부과 · 징수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9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징수)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93 국가법령정보센터